『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보고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사업개요

강서구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약에 의한『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운영기간이 2018.12.31일자로 3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재위탁하고『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림.

2. 재위탁 현황

가.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및 규모	인력	비고 (예산)
강서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길50,202호(화곡동,곰달래문화복지센터)	사무실 소회의실 겸 상담실 105.67㎡	9명	400백만원

나. 위탁현황

○ 위탁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2019. 1. 1. ~ 2021. 12. 31.(3년)

○ 위탁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등록 급식소 영양 · 위생 교육 등)

다. 추진경과

○ 재위탁 신청 : 2018. 8. 25(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정 : 2018. 9. 13(목)

- 심의위원 : 7명(위원장 : 보건소장 / 위원 6명(민간5, 공무원1)

○ 재위탁 협약 체결 : 2018. 9. 21 * 공증 2018. 9. 28

- 위탁기간: 2019. 1. 1. ~ 2021. 12. 31.(3년)

3. 관련규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센터 등 설치 · 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설치 · 운영 비용의 보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센터 지원 대상 급식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센터 등 운영의 위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설치 · 운영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2항(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201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약처 가이드라인(Ⅳ. 위탁절차, 4. 위탁계약 및 재위탁)

관 련 규 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 · 운영)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 · 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개정 2016.9.28)

○ 식약처 가이드라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2018」

Ⅳ. 위탁절차 4. 위탁계약 및 재위탁(p31~p34) 기존 수탁기관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재위탁을 결정할 때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